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71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 강경숙·차규근·황운하

김준형 • 정춘생 • 김재원

신장식 · 서왕진 · 강유정

백선희 • 김선민 • 김문수

진선미 · 고민정 · 문정복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 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학교의 일반 교원 중에서 지정되고 있는데,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지원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교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

법률 제 호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담당교원"을 "전담교원"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담당교원"을 "전담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교원에게"를 "전담교원에 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교원의 지정"을 "전담교원의 배 치"로 한다.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전문적 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이하 "학습지 원 전담교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은 제9조의 개정규정 에 따른 학습지원 전담교원이 배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 ③ (생	및 학습지원교육)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	4
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	
9조에 따른 학습지원 <u>담당교원</u> ,	<u>전담교원</u> -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	
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9조(학습지원 <u>담당교원</u>) <u>①</u> 학	제9조(학습지원 <u>전담교원</u>) <u>① 교</u>
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	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전문적
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습지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이하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	"학습지원 전담교원"이라 한다)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을 배치할 수 있다.
<u>수 있다.</u>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	②
습지원 <u>담당교원에게</u> 전문성	<u>전담교원에게</u>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	

야 한다.	,
③ 그 밖에 학습지원 <u>담당교원</u>	③전담교원
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	의 배치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